

제2608호  
2018. 11. 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공 고

제2018-75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51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역화폐 관리·운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지역화폐의 발행, 판매, 종류 및 유효기간, 유통범위, 지역화폐 대상 및 사용제한 등의 규정을 정함 (안 제3조 ~ 제6조)
- 다. 가맹점,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제11조)
- 라. 환전청구 및 환전, 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3조)
- 마. 지역화폐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5조)
- 바.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6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5597, FAX: 3396-8692, 메일: mk060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① 지역화폐는 구청장이 발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액면 금액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지류형
  2. 전자식
- ② 지류형의 경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유통범위) ①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②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구청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형 지역화폐 액면 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은 지역화폐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지류형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류형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지류형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③ 사용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지류형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일시불)와 체크카드 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류형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⑤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공사·용역·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판매점대행점 및 위탁단체 지도·감독 결과 주요사항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성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